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황 인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양형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범죄(살인, 폭행, 강간, 그리고 방화/상해)에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관(약육강식(弱肉強食)의 동물적 행위에 대한 정당, 범죄에 대한 징벌과 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규범적 측면, 법률적 입장에서의 처벌)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범법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별의 영향이 나타나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여성 판단자들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으나 남성 판단자들은 이와 반대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성차, 피해자의 성차, 양형판단, 판단자의 성차

[†] 교신저자 : 황인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hij0309@korea.com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법학 등 각각의 학문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가지 판단의 기초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기초한 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단순한 것일까?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김관현, 2000; 손동권, 2006).

심리학에서 양형의 문제에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되어 왔다. 즉, 양형이 얼마나 정확한가의 문제와 직결된 양형의 일관성(박광배, 홍성진, 1993), 피해의 크기의 영향(Thomas, Cage, & Foster, 1976), 전과, 매력, 성품, 성별 등과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징(고재홍, 1994; 김지현, 1992; 손지선, 이수정, 2007; Dion, 1972; Drout & Gaertner, 1994; Rye, Greatrix, & Enright, 2006) 등 매우 다양하다.

범죄에서 성차의 문제

범죄와 관련한 성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범죄의 양형과 관련된 성차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즉, 주로 성과 연관성 있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강간과 같은 성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성관련 범죄의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고 현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인 관계로 피해자인 여성에게 많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설명 틀을 많은 연구들은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가설(just world hypothesis)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정이 성관련 범죄의 경우, 범죄 행위의 촉발 원인을 가해자에게 찾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찾으려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Drout & Gaertner, 1994).

일반적으로 기사도(chivalry)나 온정주의(paternalism)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관대하게 양형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Moulds, 1978), 성역할이라는 사회적 규범 또한 양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Bowker, 1978). 즉, 가해 여성의 범죄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 가해자 여성에게 부과되는 형량은 기사도나 온정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심각한 범죄자로 낙인되어 더 중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입장을 악녀가설(evil women hypothesis)이라고 한다. 손지선과 이수정(2007)은 가족 내의 살인, 예를 들어 부인의 남편 살해와 같은 범죄에서 이 같은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들은 2000년도에 현재 수형생활에 있는 사건들에서 실제 가해자들이 선고 받은 형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족 살해 가해자는 일반 살해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편 살해는 가장 긴 형을, 부인 살해는 가장 짧은 형을 선고 받아 악녀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결과를 얻었다.

성역할의 문제는 신체적 차이와 관련되어 범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Garofalo, 1977).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사회화 과정에 의해 더 강화된다. 즉, 여성은 의존적이고, 온순하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표

현해도 된다고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에 반해 남성은 강인하고, 공격적이고, 섬세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도록 사회화된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쉽게 표출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있어서 또 다른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범죄에 대한 반응 즉, 두려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성역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렇다면 이 같은 성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조은경, 2003). 그 하나는 ‘신체적 취약성’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범죄에 대한 취약성’이다.

신체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두려움이란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면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같은 경향은 여성과 비슷하게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남성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이들에게 자신들의 방어 수단 부족이나 통제 상실, 결과의 심각성 등이 바로 취약성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변인들이 된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이라거나, 효과적인 방어 수단 또는 도피 가능성의 부족과 상실, 그리고 심각한 결과에 대한 예견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Killias, 1990). Maxfield(1984)는 샌프란시스코시의 3개 지역을 비교 조사하여 연령(취약성의 간접적 척도), 주거 지역(위험 요인의 간접적 척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민

감성(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로 측정됨)이 모두 상호 작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조은경, 2003, p 5. 재인용).

신체적 취약성과 더불어 또 다른 두려움을 설명하는 틀은 특정범죄에 대한 취약성이다. 성과 관련된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대상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다. 예를 들어 성 폭력의 경우 남성 범죄자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여성은 그에 대항해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일단 발생하면 여성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남성이 평소에 노출되지 않는 성적 공격에 대해서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의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게 된다(조은경, 2003, p5. 재인용; Riger, Gordon, & Lebailly, 1978).

조은경(2003)은 이 같은 가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검증하였다. 그녀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453명을 대상으로 범죄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밤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혼자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밤에 혼자 집에 있거나 택시를 타는 것에서도 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 범죄와 관련해서는 택시 강도, 불량배의 폭행, 납치/인신매매, 주거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신이 신체적으로 다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양형에 미치는 성차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성차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에서 주로 성 범죄나 가족내 살해와 같은 성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범죄의 양형결정에는 성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초보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범죄 이외의 범죄 사건들에서의 성차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 중심의 성차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판의 현장에는 당연히 재판의 형을 결정하는 재판관이나 검사의 성차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이들을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로 명명하였음). 이 같은 문제는 현재의 우리 법체계에서는 매우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부각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법개혁이 완성되어 배심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배심원들 역시 현재의 판사나 검사처럼 공평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도 성차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차 연구들에서 변인들이나 가설 혹은 가정들은 일종의 우리의 신념체계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이라거나 성역할 혹은 신체적 취약성 등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신념 혹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단자의 성차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가치나 세상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문제점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하

나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강력 사건인 살인, 폭행, 방화와 그와 관련된 상해에 대한 간단한 사건을 제시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기에 덧붙여, 범죄 가해자나 사건과 관련된 판단자의 가치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차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연구의 복잡성 때문에 그 출발을 피해자의 성별에만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경기도 소재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93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 122명(남 56명, 여 66명)은 피해자의 성별이 남자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머지 참가자 71명(남 36명, 여 35명)은 피해자의 성별이 여자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은 평균 20.17세이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피해자의 성별(집단간 변수: 2) × 판단자의 성별(집단간 변수: 2)의 요인설계이다.

절차

설문은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고(개인이 받는 설문지에는 4개의 사건이 제시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2 종류로 이루어졌다. 한 종류는 4개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으로 기술되었으며, 다른 한 종류의 설문에는 4개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기술되었다. 두 종류의 설문지에서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이외의 내용은 두 종류의 설문지 내용이 모두 같았다. 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으로 동일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설문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설문내용

범죄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 사건은 해마다 발표되는 범죄백서 주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4종류로 구성되었다. 4종류의 사건은 ‘살인’, ‘폭행’, ‘강간’, 그리고 ‘방화와 관련된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각 사건은 사건과 관련된 최소의 내용만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 어느 날 귀가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30대 중반의 (남성/여성)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시작되어 싸우는 도중에 상대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죄자는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다. 상대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사건이었다(살인).

37살 된 모 회사의 남자 과장이 직장 동료 및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사에서 생긴 문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너무 건방지고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남자/여자) 부하 직원을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 부하 직원은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1년 정도의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폭행).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20대 초반의 (남성/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관계였고 (남성/여성)은 심하게 반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피해 (남성/여성)은 그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인 상처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어야만 했다(강간).

40대 중반의 A씨는 이웃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아저씨/아주머니)인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셨으나 결국 더 큰 싸움을 하고 새벽에 헤어졌다. A씨는 귀가를 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훗김에 B씨의 집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B씨가 크게 다쳐 1년 정도의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방화/상해).

범죄에 대한 평가

제시된 각 범죄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i)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에 대한 가치 차원에서의 평가: 범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이 법칙이 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 사건들에서 보여준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1)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 (9)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ii)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차원에서의 처벌 판단: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관점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적 혹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사건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과 같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척도((1) 전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 (9) 매우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iii)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률적 차원에서 제시된 범죄사건의 행동들이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9점 척도 ((1) 전혀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 (9) 매우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iv) 마지막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을 부과해야 하는가를 년 단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이 피해자의 성별과 범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사람의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을 이 두 가지 변인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위

해 4가지 사건에 대한 각 차원에 대한 평균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제시된 범죄 전체에 대한 각 차원의 평가에 성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후속적으로 개별 사건별로 범죄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성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약육강식(弱肉強食) 법칙에 따른 평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세계의 질서와 관련된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성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가치 차원에 대한 4가지 사건들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해자의 성별(남/여)과 판단자의 성별(남/여)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 $F(1, 188) = 1.295, p = .257$,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1, 188) = 1.392, p = .24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88) = 14.386, p = .000$.

이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자 판단자들의 평균이 8.15인 것에 비해 남자 판단자들의 평균은 7.36으로 전체적으로 중간 값인 5보다 높아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조금 더 허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에서 보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을 개별 사건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4가지 사건 모두에서 남자 판단자들에 비해 여자 판단자들이 제시된 각 범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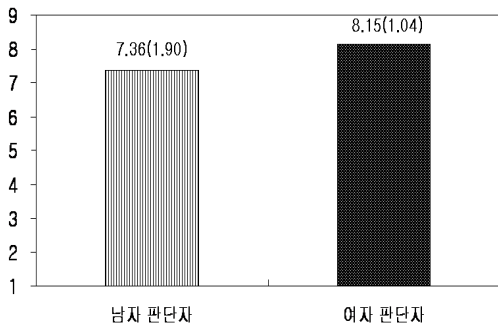


그림 1. 약육강식 가치에 따른 사건 평정¹⁾
(판단자의 성별)

표 1.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사건 평정³⁾

사건	남 자	여 자	F 값
살인	6.98	7.57	5.34*
폭행	7.36	7.96	6.29*
강간	7.51	8.63	21.60***
방화/상해	7.62	8.35	10.79***
합계	7.36	8.15	14.39***

* $p < .05$, *** $p < .001$ (약육강식 가치)

동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한편 모든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별의 주효과와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²⁾

- 1) 값이 적을수록 이 차원에서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함.
- 2) 지면의 편의상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함.
- 3) 값이 적을수록 이 차원에서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함.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차원에서 평가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가치 차원에서 범죄를 바라보는가와 관련된 평가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약육강식(弱肉強食) 가치와 마찬가지로 4가지 사건들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해자의 성별(남/여)과 판단자의 성별(남/여)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 $F(1, 188) = 6.504, p = .012$,와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88) = 8.845, p = .003$.

그림 2의 왼쪽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의 평균값과 여자인 경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6.88인 것에 비해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7.31로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 비해 피해자가 여자이면 더욱 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벌이란 법률적 의미의 처벌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 의미의 응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남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할 때 보다는 약자인 여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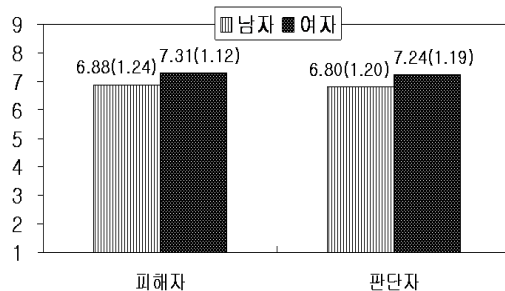


그림 2. 인과응보적 가치 차원에 따른 사건 평정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

범죄의 대상으로 할 때, 더 응징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그림 2의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범죄 사건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피험자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 판단자의 경우 6.80, 여자 판단자의 경우 7.24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꼭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한 가능한 한 해석은 조은경(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자신들이 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88) = 2.184, p = .141$.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차원에서 범죄를 평가하는 이 같은 경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각 사건별로 나누어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이하 표 2 참조). 그 결과,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별의 주 효과와, $F(1, 189) = 0.636, p = .426$,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1, 189) = 0.464,$

$p = .49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판단자의 성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89) = 5.522, p = .020$. 즉, 남자들(6.01)에 비해 여자들(6.53)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가해자가 더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7.40)에 비해 여자인 경우(8.30)에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F(1, 189) = 13.773, p = .000$. 또한 판단자가 남성일 때(7.43)보다는 여성인 경우(8.03)에 강간의 가해자를 더 강하게 응징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F(1, 189) = 6.960, p = .009$.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89) = 0.005, p = .945$.

그리고 ‘방화 및 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자가 남자인 경우(7.07)에 비해 여자인 경우(7.39)에 방화/상해를 입한 가해자를 더 응징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F(1, 189) = 5.12, p = .025$. 이 같은 경향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F(1, 189) = 9.727, p = .002$.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후대비³⁾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은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 판단자와 여자 판단자간에 평정에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 판단자에 비해 여자 판단자가 가해자를 더 강하게 응징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F(1, 189) = 2.195, p = .140$, 피해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3) SPSS의 경우 상호작용간의 사후대비를 하기 위한 방식이 제공되지 않아 편의상 일원변량분석 상에서 Tukey방식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판단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인과응보적 가치차원의 평정

사건	피해자(남)		피해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살인	6.00	6.41	6.03	6.77
폭행	6.63	6.85	6.92	7.34
강간	7.09	7.71	7.97	8.63
방화/상해	7.21	7.02	6.83	8.09
합계	6.73	7.00	6.92	7.71

한편, ‘폭행’의 경우에는 판단자의 성별이나 피해자의 성별의 주 효과와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해자 성별의 주효과, $F(1, 189) = 2.612, p = .108$; 판단자 성별의 주효과, $F(1, 189) = 1.785, p = .183$; 상호작용 효과, $F(1, 189) = 0.174, p = .677$).

법률적 차원에서 평가

범죄란 형법에 정해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되었던 범죄가 명백하게 형법에 존재한 것이고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이 비록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이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89) = 3.977, p = .048$. 즉, 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일 때(7.76)보다 피해자가 여성일 때(7.97) 범죄의 가해자가 더 법률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판단자가 남자(7.78)일 때보다 여자(8.02)인 경우에 범죄의 가해자를 더 법률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F(1, 189) = 4.379, p = .038$.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89) = 2.024, p = .156$.

이 같은 경향을 각 사건별로 살펴보면, 먼저 ‘살인’의 경우, 판단자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F(1, 189) = 3.956, p = .048$, 판단자가 남자(6.98)인 경우에 비해 여자(7.41)인 경우에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성별과, $F(1, 189) =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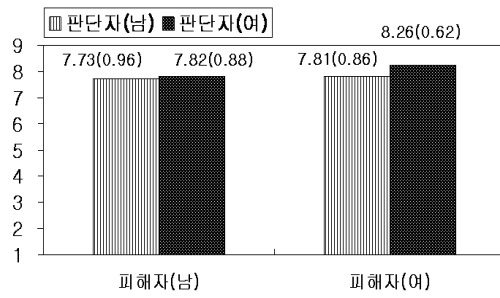


그림 3. 법률적 차원에 따른 사건에 따른 판단자의 평정

표 3. 판단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평정

사건	피해자(남)		피해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살인	6.86	7.32	7.17	7.57
폭행	7.52	7.55	7.69	8.00
강간	8.20	8.44	8.19	8.94
방화/상해	8.36	7.97	8.17	8.51
합계	7.73	7.82	7.81	8.26

$p = .198$,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1, 189) = 0.017, p = .89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이하 표 3 참조).

‘강간’의 경우 역시 살인과 마찬가지로 판단자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F(1, 189) = 8.164, p = .005$, 판단자가 남자(8.20)인 경우에 비해 여자(8.61)인 경우에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성별과, $F(1, 189) = 2.089, p = .150$,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1, 189) = 2.122, p = .14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방화/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자의 성별과, $F(1, 189) = 0.016, p = .900$, 피해

자의 성별의 주효과는, $F(1, 189) = 1.248, p = .26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89) = 5.377, p = .021$. 즉, 남자 판단자들은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 차이가 없으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경우에 법률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폭행’의 경우에는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가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판단자의 성별이나 피해자의 성별의 주 효과와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피해자 성별의 주효과, $F(1, 189) = 2.315, p = .130$; 판단자 성별의 주효과, $F(1, 189) = 0.645, p = .423$; 상호작용 효과, $F(1, 189) = 0.449, p = .504$).

범죄자에 대한 양형 평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처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범죄자에 형량을 년 단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부여함에 있어, 남자 판단자들에 비해 여자 판단자들이 범죄에 대해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81) = 8.164, p = .005$. 이에 반해, 피해자의 성별과 두 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성별 주 효과, $F(1, 181) = 1.267, p = .262$; 상호작용 효과, $F(1, 181) = 2.471, p = .118$).

개별 사건들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기를 살펴보기 위해 각 사건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이하 표 4 참조). 먼저 ‘살인’의 경우, 판단자의 성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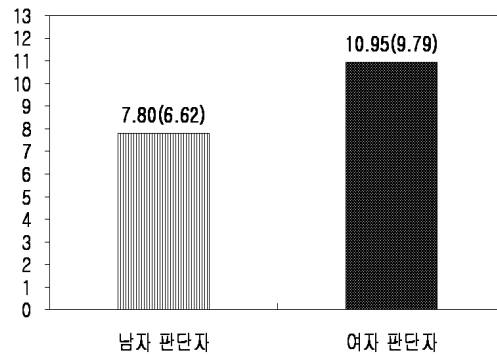


그림 4. 사건에 대한 형량 판단

표 4. 판단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사건에 대한 형량 평균

사건	피해자(남)		피해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판단자남	판단자여
살인	10.75	14.02	12.94	16.59
폭행	2.87	5.72	2.78	6.06
강간	11.73	14.44	8.39	25.09
방화/상해	5.98	6.35	5.75	7.40
합계	8.03	9.75	7.47	13.18

였다, $F(1, 187) = 3.204, p = .075$. 즉, 남자 판단자들(11.61)에 비해 여자 판단자들(14.09)들이 더 많은 기간을 형량을 부여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별과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피해자 성별, $F(1, 187) = 1.515, p = .218$; 상호작용 효과, $F(1, 187) = 0.010, p = .922$).

‘폭행’의 경우 역시 판단자의 성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남자 판단자들(2.83)에 비해 여자 판단자들(5.84)이 더 많은 기간을 형량으로 부과하였다, $F(1, 185) = 5.510, p = .020$.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의 성

별의 주 효과나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피해자 성별, $F(1, 185) = 0.009, p = .925$; 상호작용 효과, $F(1, 187) = 0.027, p = .869$).

‘강간’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강간범에 대해 남자 판단자들이 10.41년의 형량을 부과한 것에 비해 여자 판단자들은 18.20년으로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였다, $F(1, 186) = 13.718, p = .008$. 이 같은 효과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관되는 경우, 그 양상이 달라졌다(상호작용효과, $F(1, 186) = 7.125, p = .008$). 즉,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자 판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14.44년의 형량을,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25.09년의 형량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남자 판단자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남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11.73년의 형량을,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8.39년의 형량을 부과하여 뚜렷한 성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방화/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별의 주 효과, 판단자의 성별의 주 효과,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피해자 성별, $F(1, 188) = 0.148, p = .701$; 판단자 성별, $F(1, 188) = 0.896, p = .345$; 상호작용 효과, $F(1, 188) = 0.363, p = .548$).

논 의

본 연구는 가치관과 같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범죄자를 처벌하는 양형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범죄(살인, 폭행, 간강, 그리고 방화/상해)에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관(약육강식(弱肉強食)의 동물적 행위에 대한 정당, 범죄에 대한 징벌과 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규범적 측면, 법률적 입장에서의 처벌)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범법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범죄를 평균하는 경우,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별의 영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판단의 경우,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좀 더 범죄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범죄자에 대해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응징을 해야 한다고 보고,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피해자의 성별 역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판단에 있어서 판단자의 성별만큼 강력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일 때에 비해 여자인 경우에 더욱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더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규범적 가치 차원에서 범죄를 판단하는 경우에서도 남자가 피해를 입은 범죄에 비해 여

자가 피해를 입은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만큼 그대로 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성차의 효과는 개별 사건의 경우, 비교적 재미있는 결과들을 보였다. 물론, 몇 가지 가치차원이나 양형부과에 있어서 성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간의 경우,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것이 있다. 강간의 경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 성차와 관련된 연구의 중심에 있기는 하다(Drout & Gaertner, 1994; Miller, 2002; Rye, Greatrix, & Enright,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중 흥미를 끄는 것은 강간에 대한 양형 판단에 있다. 여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보다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 그 가해자에게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을 때보다 남자들이 강간을 당한 경우, 그 강간자에게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자는 강간을 당할 수 있다는 미신과 같은 고정관념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여자의 강간에 대해 남자보다 낮은 양형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설명도 가능한데, 그것은 남자 강간자에 대한 편견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강간이라는 것이 범죄의 하나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사례처럼,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두 말할 것도 없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한 판단에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결부되어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 비해 남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판단자의 강간에 대한 태도와 혹은 가해자의 성별 같은 부분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치판단에서의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가치판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형량에서는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가치와 형량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가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가치, 그리고 법률적 판단과 양형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과 양형간의 상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r = .061, p = .408$) 다른 변수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양형의 경우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가치와의 상관이 $.235(p = .001)$ 이었고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가치와는 $.172(p = .020)$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치와 양형이 어느 정도 관계는 있으나 전적으로 양형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양형과 성차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피해자의 성과 판단자의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

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제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배심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배심원들의 성과 피해자의 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가치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형 결정에 있어서 판단자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초보적으로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례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권력동기, 감정이입, 자존감 등)과 상황(본 연구에서는 사례)과의 상호작용을 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구체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법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검찰, 변호사, 그리고 경찰 등의 법의 운용이나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가치나 규범에 관한 측정을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같은 측정방식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다양한 방식의 문항을 가지고 있는 척도를 사용했다면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4가지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었다. 물론 기존의 성관련 범죄에 국한된 연구들에 비하면 좀 더 폭을 넓힌 연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범죄, 예를 들어, 강력범죄와 경범죄, 사적 이익과 관련되는 범죄와 공적 이익과 관련된 범죄와 같은 분류 틀 속에서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관현 (2000).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현 (1992).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목적 선호와 형량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맥락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1-21.

고재홍 (1994). 가해자 외모와 형량판단간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68-84.

고재홍 (1995).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29-50.

고재홍 (1996). 책임판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 1-20.

고재홍·백상철 (1994).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의 사용차이. 사회과학연구(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6, 77-88.

박광배, 홍성진 (1993).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 73-89.
- 손동현 (2006).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 살해의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7.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1-21.
- Bowker, L. H. (1978). *Women,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exington, MA: Heath.
- Dion, K. (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07-213.
- Drout, C. E., & Gaertner,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female victi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67-278.
- Garofalo, J. (1977). *Public opinion about crime: The attitudes of victims and non-victims in selected cities*. National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Statistics Serv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U. 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97-108.
- Maxfield, M (1984).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233-250.
- Miller, J. (2002). The strengths and limits of 'doing gender' for understanding street crime. *Theoretical Criminology*, 6, 433-460.
- Moulds, E. F. (1978). Chivalry and Paternalism: Disparities of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ster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1, 416-440.
- Rye, B. J., Greatrix, S., & Enright, C. S. (2006). The case of the guilty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of victim and gender perpetrator on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Sex Roles*, 54, 639-649.
- Thomas, C. W., Cage, R. J., & Foster, S. C. (1976). Public opinion on criminal law and legal sanction: An examination of two conceptual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7, 110-116.
- 1 차원고접수 : 2007. 4. 02.
심사통과접수 : 2007. 4. 27.
최종원고접수 : 2007. 5. 15.

The Gender Effect of Victim and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Hwang In Jung

Kyonggi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 effect of victim and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For this ai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3 students regarding their assessment of cases including murder, assault, rape, and arson as well as their values related to those cases. The result shows the strong gender effects of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Wo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than men on the given cases. And also, Women showed more sterner values regarding the cases than men. Especially, in the rape case, wo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when they sentenced the woman victim case than the man case. On the other hand, 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when they sentenced the man victim case than the woman case.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victim's gender difference, judge's gender difference, the assessment of a case